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직업교육정책관으로”를 “산학협력정책관으로”로, “직업교육정책관은”을 “산학협력정책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직업교육정책관”을 “산학협력정책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고등교육정책과·지역혁신대학지원과·국립대학정책과·사립대학정책과·학술진흥과·대학재정장학과·대학학사제도과·대입정책과·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중등직업교육정책과·전문대학정책”을 “고등교육정책과·지역혁신대학지원과·국립대학정책과·사립대학정책과·학술진흥과·대학재정장학과·대학학사제도과·대입정책과·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직업교육정책과·전문대학정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단서 중 “중등직업교육정책과장”을 “직업교육정책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6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등직업교육정책과장”을 “직업교육정책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직업교육 정책의 총괄·관리 및 연계·조정

제9조의 제목 “(평생미래교육국)”을 “(평생교육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평생미래교육국장”을 “평생교육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평생미래교육국에 미래교육기획과·평생학습정책과·진로교육정책”을 “평생교육국에 평생학습정책과·인재양성정책과·진로교육정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에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 그 밖에 평생교육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인재양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재정책 및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인적자원개발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3.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4.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에 관한 사항
5. 글로벌 인재 포럼 및 미래교육·인재개발정책 관련 포럼의 운영
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인적역량 전략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7. 대한민국 인재상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8. 영재교육진흥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9.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10. 초·중등학교 과학·수학·정보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1. 과학·수학·정보교육 진흥에 관한 사업 추진
12. 과학고등학교 및 과학중점학교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13. 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한 교원의 역량 강화, 지원 인프라 구축·운영, 체험·탐구·활용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융합인재교육 활성화 총괄

제9조제8항(종전의 제7항)에 제24호 및 제2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한국형 온라인 대중강좌(K-MOOC) 구축·운영
 25. 온라인 대중강좌 등을 활용한 산업연계 단기 직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제10장의 제목 “한시정원”을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으로 한다.

제23조를 제24조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2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식품영양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4월 30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교육부에 두며, 별표 9의 정원 1명(5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23조(미래교육추진담당관) ① 미래교육추진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미래교육추진담당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다. 별표 7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표 9의 제목 중 “(제23조 관련)”을 “(제24조 관련)”으로 하며, 같은 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4조제4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2년 4월 30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 또는 식품위생사무관	1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7의2] <신 설>

교육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2항 관련)

1. 미래교육추진담당관(존속기한: 2023년 6월 7일)

총계	4
일반직 계	4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편사연구관 또는 교육연구관	3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고등교육정책실) ① (생략)	제6조(고등교육정책실)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고등교육정책관·대학학술정책관 및 <u>직업교육정책관</u> 으로 하며, 고등교육정책관·대학학술정책관 및 <u>직업교육정책관</u> 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 ----- ----- ----- <u>산학협력정책관</u> 으로 ----- ----- <u>산학협력정책관</u> 은 ----- ----- -----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u>직업교육정책관</u> 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45호부터 제6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고등교육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⑤ <u>산학협력정책관</u> ----- ----- ----- ----- -----.
⑥ 고등교육정책실에 <u>고등교육정책과·지역혁신대학지원과·국립대학정책과·사립대학정책과·학술진흥과·대학재정장학과</u>	⑥ ----- <u>고등교육정책과·지역혁신대학지원과·국립대학정책과·사립대학정책과·학술진흥과·대학재정장학과</u>

과·대학학사제도과·대입정책과·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중등직업교육정책과·전문대학정책과 및 전문대학지원과를 둔다.	· 대학학사제도과·대입정책과·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직업교육정책과·전문대학정책----- ----- --.
⑦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u>중등직업교육정책과</u> 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⑦ ----- -----. --- <u>직업교육정책과</u> 장----- -----.
⑧ ~ ⑮ (생략)	⑧ ~ ⑮ (현행과 같음)
⑯ <u>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u> 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⑯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삭제	<삭제>
2. <u>직업교육 정책의 총괄·관리 및 연계·조정</u>	
3. ~ 32. (생략)	3. ~ 32. (현행과 같음)
⑰ <u>중등직업교육정책과</u> 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⑰ <u>직업교육정책과</u> ----- -----.
1. ~ 22. (생략)	1. ~ 22. (현행과 같음)
<신설>	23. <u>직업교육 정책의 총괄·관리 및 연계·조정</u>
⑱·⑲ (생략)	⑱·⑲ (현행과 같음)
제9조(평생미래교육국) ① <u>평생미래교육국</u>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제9조(평생교육국) ① <u>평생교육국</u> 장-----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평생미래교육국에 미래교육기획과·평생학습정책과·진로교육정책과 및 이러닝과를 둔다.

③ (생략)

④ 미래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정책 수립·시행
2. 인재정책 및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3. 인적자원개발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4.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5.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에 관한 사항
6. 글로벌 인재 포럼 및 미래교육·인재개발정책 관련 포럼의 운영
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② 평생교육국에 평생학습정책과·인재양성정책과·진로교육정책-----

③ (현행과 같음)

<삭제>

인적역량 전략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8. 대한민국 인재상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9. 한국형 온라인 대중강좌(K-MOOC) 구축·운영

10. 온라인 대중강좌 등을 활용한 산업연계 단기 직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11. 영재교육진흥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2.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13. 초·중등학교 과학·수학·정보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4. 과학·수학·정보교육 진흥에 관한 사업 추진

15. 과학고등학교 및 과학중점학교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16. 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한 교원의 역량 강화, 지원 인프라 구축·운영, 체험·탐구·활용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융합인재교육 활

성화 총괄

17. 그 밖에 평생미래교육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평생학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6. (생략)

<신설>

<신설>

⑤ -----
-----.

1. ~ 26. (현행과 같음)

27. 그 밖에 평생교육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인재양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재정책 및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인적자원개발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3.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4.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에 관한 사항

5. 글로벌 인재 포럼 및 미래교육·인재개발정책 관련 포럼의 운영

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인적역량 전략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⑥ (생략)

⑦ 이러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3. (생략)

<신설>

7. 대한민국 인재상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8. 영재교육진흥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9.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10. 초·중등학교 과학·수학·정보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1. 과학·수학·정보교육 진흥에 관한 사업 추진

12. 과학고등학교 및 과학중점학교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13. 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한 교원의 역량 강화, 지원 인프라 구축·운영, 체험·탐구·활용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융합인재교육 활성화 총괄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⑧ -----
-----.

1. ~ 23. (현행과 같음)

24. 한국형 온라인 대중강좌(K-MOOC) 구축·운영

<u><신 설></u> <u>제10장 한시정원</u> <u><신 설></u> <u>제23조(한시정원) ①·② (생 략)</u> <u>③ 삭 제</u> <u><신 설></u>	<u>25. 온라인 대중강좌 등을 활용한 산업연계 단기 직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u> <u>제10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u> <u>제23조(미래교육추진담당관) ①</u> <u>미래교육추진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u> <u>② 미래교육추진담당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 의2와 같다.</u> <u>제24조(한시정원) ①·② (현행과 같음)</u> <u>④ 식품영양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4월 30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교육부에 두며, 별표 9의 정원 1명(5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u>
--	---